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67
------	------

제출일자 : 2021. 4. 5.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1. 제안이유

<2021~2025 금천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따라 감염병 상시 예방체계 구축, 스마트시티 조성, 뮤지컬스쿨 운영 등 구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 추진인력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를 1,167명에서 1,172명으로 조정함(안 제2조)

- 집행기관의 정원: 1,141명 → 1,146명 (증 5)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기준을 조정함(안 별표 3)

- 총 계: 1,167명 → 1,172명 (증 5)

- 일 반 직 계: 1,163명 → 1,168명 (증 5)

- 6급 이하 계: 1,100명 → 1,105명 (증 5)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기준인건비 반영)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1. 2. 26. ~ 2021. 3. 18.): 별도 의견 없음
- 2)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3) 비용추계서: 별첨
- 4) 규제사전심사: 원안동의
- 5)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6)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167명”을 “1,17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141명”을 “1,146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172	1,172			
정 무 직	1	1			
일반직 계	1,168	1,168			
3급	1	1			
4급	8	6	1	1	
5급	52	32	2	8	10
6급 이하 계	1,105	1,105			
전문경력관 계	2	2			
별정직 계	3	3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2	2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u>1,167명</u>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u>1,141명</u></p> <p>2. (생략)</p> <p>[별표 3]</p> <p style="text-align: center;">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text-align: left;">기관별 직급별</th> <th>총계</th> <th>본청</th> <th>구의회사무국</th> <th>보건소</th> <th>동</th> </tr> </thead> <tbody> <tr> <td>총 계</td> <td><u>1,167</u></td> <td colspan="4"><u>1,167</u></td> </tr> <tr> <td>정 무 직</td> <td>1</td> <td colspan="4">1</td> </tr> <tr> <td>일반직 계</td> <td><u>1,163</u></td> <td colspan="4"><u>1,163</u></td> </tr> <tr> <td>3급</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r> <tr> <td>4급</td> <td>8</td> <td>6</td> <td>1</td> <td>1</td> <td></td> </tr> <tr> <td>5급</td> <td>52</td> <td>32</td> <td>2</td> <td>8</td> <td>10</td> </tr> <tr> <td>6급 이하 계</td> <td><u>1,100</u></td> <td colspan="4"><u>1,100</u></td> </tr> <tr> <td>전문경력관 계</td> <td>2</td> <td colspan="4">2</td> </tr> <tr> <td>별정직 계</td> <td>3</td> <td colspan="4">3</td> </tr> <tr> <td>5급 상당</td> <td>1</td> <td colspan="4">1</td> </tr> <tr> <td>6급 상당 이하</td> <td>2</td> <td colspan="4">2</td> </tr> </tbody> </table>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구의회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u>1,167</u>	<u>1,167</u>				정 무 직	1	1				일반직 계	<u>1,163</u>	<u>1,163</u>				3급	1	1				4급	8	6	1	1		5급	52	32	2	8	10	6급 이하 계	<u>1,100</u>	<u>1,100</u>				전문경력관 계	2	2				별정직 계	3	3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2	2				<p>제2조(정원의 총수) ----- ----- -----<u>1,172명</u>----- -----.</p> <p>1. ----- <u>1,146명</u></p> <p>2. (현행과 같음)</p> <p>[별표 3]</p> <p style="text-align: center;">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text-align: left;">기관별 직급별</th> <th>총계</th> <th>본청</th> <th>구의회사무국</th> <th>보건소</th> <th>동</th> </tr> </thead> <tbody> <tr> <td>총 계</td> <td><u>1,172</u></td> <td colspan="4"><u>1,172</u></td> </tr> <tr> <td>정 무 직</td> <td>1</td> <td colspan="4">1</td> </tr> <tr> <td>일반직 계</td> <td><u>1,168</u></td> <td colspan="4"><u>1,168</u></td> </tr> <tr> <td>3급</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r> <tr> <td>4급</td> <td>8</td> <td>6</td> <td>1</td> <td>1</td> <td></td> </tr> <tr> <td>5급</td> <td>52</td> <td>32</td> <td>2</td> <td>8</td> <td>10</td> </tr> <tr> <td>6급 이하 계</td> <td><u>1,105</u></td> <td colspan="4"><u>1,105</u></td> </tr> <tr> <td>전문경력관 계</td> <td>2</td> <td colspan="4">2</td> </tr> <tr> <td>별정직 계</td> <td>3</td> <td colspan="4">3</td> </tr> <tr> <td>5급 상당</td> <td>1</td> <td colspan="4">1</td> </tr> <tr> <td>6급 상당 이하</td> <td>2</td> <td colspan="4">2</td> </tr> </tbody> </table>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구의회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u>1,172</u>	<u>1,172</u>				정 무 직	1	1				일반직 계	<u>1,168</u>	<u>1,168</u>				3급	1	1				4급	8	6	1	1		5급	52	32	2	8	10	6급 이하 계	<u>1,105</u>	<u>1,105</u>				전문경력관 계	2	2				별정직 계	3	3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2	2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구의회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u>1,167</u>	<u>1,167</u>																																																																																																																																															
정 무 직	1	1																																																																																																																																															
일반직 계	<u>1,163</u>	<u>1,163</u>																																																																																																																																															
3급	1	1																																																																																																																																															
4급	8	6	1	1																																																																																																																																													
5급	52	32	2	8	10																																																																																																																																												
6급 이하 계	<u>1,100</u>	<u>1,100</u>																																																																																																																																															
전문경력관 계	2	2																																																																																																																																															
별정직 계	3	3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2	2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구의회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u>1,172</u>	<u>1,172</u>																																																																																																																																															
정 무 직	1	1																																																																																																																																															
일반직 계	<u>1,168</u>	<u>1,168</u>																																																																																																																																															
3급	1	1																																																																																																																																															
4급	8	6	1	1																																																																																																																																													
5급	52	32	2	8	10																																																																																																																																												
6급 이하 계	<u>1,105</u>	<u>1,105</u>																																																																																																																																															
전문경력관 계	2	2																																																																																																																																															
별정직 계	3	3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2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인력충원에 따른 인건비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직급별 비율 :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별표 2] 직급별 정원채정 기준에 따름

구 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 문 경력관
채정기준	1%이내	6%이내	21%이내	31%이내	30%이내	10%이상	1%이내
개정후 비율	0.77%	4.44%	18.86%	29.69%	28.58%	17.15%	0.17%

- 인건비 기준액

구분	호봉 기준	21년 기준액	증원
9급	1호봉	3,690천 원/월	2명
7급	1호봉	4,117천 원/월	3명

※ ① 기본급+②고정수당(정액급식비,대민활동비,명절휴가비,정근수당,직급보조비)+③추가수당(가족수당,시간외 수당,학비보조,출장비,연차수당,특수근무수당)+④복지포인트

- 임금인상율 : 연2.3%적용(최근 5년 평균)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세출	인건비	236,772	242,218	247,789	253,488	259,318	1,239,585
	소 계	236,772	242,218	247,789	253,488	259,318	1,239,585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국비		-	-	-	-	-	
시비							
구비	자체재원	236,772	242,218	247,789	253,488	259,318	1,239,585
	의존재원						
	지방채 등						
민간							
기타							
합계		236,772	242,218	247,789	253,488	259,318	1,239,585

5. 작성자 : 행정지원과 인사팀 임수애 (2627-1012)

현행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31.>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167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3.10.31, 2015.5.18, 2019.5.9, 2020.3.25, 2020.12.31>

1. 집행기관의 정원: 1,141명 <개정 2015.5.18., 2019.5.9, 2020.3.25, 2020.12.31>
2.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6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구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3.10.31>

② 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3.10.31.>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0.31., 2013.12.10>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0.31., 2013.12.10>

부 칙(제1131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분	일반직	별정직·정무직
비율	99% 이상	1% 이내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비 율	1%이내	6%이내	21%이내	31%이내	30%이내	10%이상	1%이내

2. 별정직 공무원

구 분	5급 상당 이상	6급 상당	7급 상당 이하
비 율	35% 이내	35% 이내	30% 이상

비 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u>1,167</u>	<u>1,167</u>			
정 무 직	1	1			
일반직 계	<u>1,163</u>	<u>1,163</u>			
3급	1	1			
4급	8	6	1	1	
5급	52	32	2	8	10
6급 이하 계	<u>1,100</u>	<u>1,100</u>			
전문경력관 계	2	2			
별정직 계	3	3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2	2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7. 3., 2013. 12. 4.>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